

북한 공로자년금의 제도와 실태에 관한 연구*

민기채 (주저자, 한국교통대학교)

조성은 (교신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경훈 (공동저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원자료(법령과 사전)에 기초하여 북한 공로자년금 제도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공로자년금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제도와 실태 간 일치 수준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 공로자년금 제도가 독립된 특수지역연금 제도 또는 특별연금제도인지 아니면 통합된 연금제도 내의 부가급여 제도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은 1946년부터 2016년까지 공로자년금과 관련된 북한 법령과 북한 사전을 통한 공간문헌 분석 및 공로자년금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질적 인터뷰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와 실태 간 일치 수준에 대한 분석결과, 완전 일치의 경우, 공민이면 누구나 공훈에 따라 공로자년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적용대상 기준, 년로연금 수급연령과 동일한 연령 기준, 공훈과 연동한 급여 수준,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급여수준, 통합 재정체계 및 통합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다. 부분 일치의 경우, 급여종류에 있어서 공로자년금과 공로자유가족년금은 확인되나 공로자로동능력상실년금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공로자년금은 독립된 특수지역연금제도 또는 특별연금제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재정과 전달체계가 기존 연금제도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된 하나의 제도 내에서 부가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연금급여라고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통일 후 연금제도 통합 시 북한 주민의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 본 논문은 국민연금연구원(2017)의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연구」의 일부 내용을 발췌, 수정한 것임.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통일, 북한, 공로자연금, 노후소득보장, 북한이탈주민

I. 서론

통일 후에는 통합적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사회보장제도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본권, 특히 사회권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모두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통일 이전 사회보장수급권의 재산적 가치가 온당하게 통일 이후에도 보장된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겠다. 그러나 통일 이전의 수급적 권리가 불편부당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의가 제기된다면, 그것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동독 시절 국가공안부, 국가안전처, 경찰서, 군대, 세관에 근무하였던 특수직 종사자들이 통독 이후 연금수급권 보장에 대하여 지난한 소송을 제기하여 왔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¹⁾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 공로자들이 자신의 과거 연금수급권에 대하여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동독 주민들의 소송 역사가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재현될 수 있다.

제도 통합 시 사회권도 보장하고 재산권도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합 이전에 남북한 각각의 제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되어 왔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선차적이다. 통합 전 제도 이해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

1) 민기채 · 주보혜, “체제전환 전후 동독 특별·부가 연금제도의 변화: 통일 이후 북한 특권층 연금제도의 통합 시나리오 및 방향,” 『보건사회연구』, 제36권 3호 (2016), pp. 516~552.

나 공로자년금에 대한 제도 분석은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제도 분석의 수준도 매우 낮다. 공로자년금에 대한 제도 파악이 낮은 수준에서 통일 이후 공로자년금의 통합 방향에 대해 논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분단 이전 비스마르크연 사회보험의 역사를 60여년 공유하였기 때문에 통합의 과정이 상대적으로 순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의 경우, 분단 이전에 사회보험의 역사 공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통합의 과정은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

연금이 사회권이자 재산권과 관련되므로 제도 통합의 과정에서 행정 심판 및 행정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북한 공로자년금 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북한 제도를 알아야 통일 후 제도 통합방향을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 공로자년금 제도에 대한 이해는 낮고 불분명하다. 특히 공로자년금이 독립된 특수직역연금제도 또는 특별연금제도인지, 아니면 통합된 연금제도 내에서 부가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현금급여인지에 대한 주장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의 경우, 4개의 특별(특수직역)연금제도와 27개의 부가연금제도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다.²⁾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만약 공로자년금이 독립된 특수직역연금제도 또는 특별연금제도로 규정된다면 제도 통합 시 남한의 특수직역연금제도 중 하나와 통합하자는 주장이 커질 공산이 있다. 반면 공로자년금이 통합된 연금제도의 하나로 이해된다면, 그러한 주장의 강도는 보다 약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적용대상, 급여수준, 재정, 전달체계의 제도적 분리 정도를 중심으로 공로자년금이 독립적인지 통합적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왜 북한 공로자년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가? 그것은 2가지

2) 위의 논문, p. 541.

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는 기존 연구들이 북한 원자료 분석 시, 법령에 기초하다보니 추상적 이해만 가능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연구방법에 있어서 문헌분석에 의존하다보니, 현실을 분석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원자료 분석에서 법령을 넘어 사전(辭典)을 추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 사회보장 연구에서 사전을 활용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법령은 보다 높은 추상적 수준이지만, 사전은 그 보다는 낮은 추상적 수준으로 제도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므로 기존 연구에서 포착하지 못한 제도적 특징을 분석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공로자년금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를 모집하여 질적 인터뷰를 수행함으로써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제도와 실태 간 일치 수준을 파악하여 북한 공로자년금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의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북한 원자료(법령과 사전)에 기초하여 북한 공로자년금 제도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공로자년금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제도와 실태 간 일치 수준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 공로자년금 제도가 독립된 특수연금제도인지 아니면 통합된 연금제도 내의 부가급여 제도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통일 후 연금제도 통합 시 북한 주민의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다수의 연구에서 북한의 연금제도 분석은 법령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

다.³⁾ 1946년 6월에 공시된 「북조선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에 따라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하여 의무적 사회보험제가 실시되었으며, 1946년 12월에 공시된 「사회보험법」에 의해 폐질년휴금, 유가족년휴금, 양로년휴금 등 급여 종류를 비롯하여 사회보험의 적용대상, 재정, 전달 체계 등의 내용이 규정되었다. 1951년 8월에 결정된 「국가사회보장에 관하여」는 노동능력상실자, 년로자, 유가족, 공로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 취업지원, 기타 생활보호 조치 등을 규정하였다. 1956년 2월부터 실시된 「국가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규정 승인에 대하여」는 공로자연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958년 2월에는 「국가사회보험 및 노동보호관계 산업에 대한 관리기능을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에 부여함에 관하여」에 의하여 국가사회보험 등의 관리기능이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에 부여되었다. 1978년 4월에 채택된 「사회주의노동법」에는 노동능력 일시 상실자에 대한 국가사회보험제의 일시적 보조금 및 노동능력상실자에 대한 국가사회보험제의 노동능력상실년금이 규정되어 있고, 년로년금 및 공로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 등이 규정되어 있다. 1985년 10월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는 사회보장제의 실시 범위

3) 정경배 외, 『남북한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pp. 48~61; 박진·이유수,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및 통합방향』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4), pp. 34~40; 김영윤,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비교,” 『사회보장연구』, 제10권 2호 (1994), pp. 105~107; 이용하·이정우, 『통일시 남북한 연금제도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2002), pp. 26~34; 이철수, 『북한사회복지 - 반복지의 북한』 (서울: 청목출판사, 2003a), pp. 96~114; 이철수, 『북한사회복지법령집』 (서울: 청목출판사, 2003b); 우해봉 외, 『남북한 통일과 노후소득보장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서울: 국민연금연구원, 2011), pp. 52~62; 문형표·이지혜, “남북한 통일 시 연금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8월호 (2013), pp. 30~39; 이철수·민기채, “북한 사회보장과 연금제도 운영실태 분석,” 김원섭 외 공저, 『통일 연금연구 1』 (서울: 국민연금연구원, 2014), pp. 145~164.

가 협동농민들까지 확대되었음을 밝힌다.

이러한 법령 분석을 기초로 하여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북한의 연금제도를 급여종류별로 크게 공로자연금, 년로연금, 노동능력상실연금, 유가족연금 등으로 구분하였다.⁴⁾ 혹은 앞의 구분 외에 (영예)군인년금을 별도의 연금 형태로 포함하기도 하였다.⁵⁾ 이 중 공로자연금과 (영예)군인년금의 경우 선행연구에 따라 북한의 연금 형태 중 하나로 분류되기도 하고 분류되지 않기도 하고 있다. 이는 법령 등 원전의 제한된 활용, 시행 실태에 대한 정보 부족에 의한 해석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연금제도의 한 형태로서 공로자년금을 다룬 선행연구는 주로 1956년 2월의 「국가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규정 승인에 대하여」를 바탕으로 제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부 연구는 위 공표의 내용을 근거로 공

4) 정경배 외, 『남북한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p. 65; 박진·이유수,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및 통합방향』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4), pp. 35~37; 김영운,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비교,” pp. 106~107; 이용하·이정우, 『통일시 남북한 연금제도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p. 37; 장용철,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기초연구,” 유근춘 외,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III)』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p. 127; 혹은 앞의 네 가지 연금에 ‘영예군인과 영예전상자에게 주는 보조금’, ‘인민군 후방가족 원호 보조금’ 등 기타 보조금을 사회보장제로 함께 묶어 제시하기도 하였다. 백진현, “통일한국의 연금제도,” 『통일문제연구』, 제19권 (1997), pp. 20~23.

5) 노용환·연하청, 『북한의 주민 생활보장정책 평가 - 국가배급제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pp. 74~75; 이철수, 『북한사회복지 - 반복지의 북한』, p. 103; 우해봉 외, 『남북한 통일과 노후소득보장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pp. 56~58; 이현경,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비교분석 - 사회적 욕구충족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감소를 위한 정책과 실태,” 『통일문제연구』, 제25권 1호 (2013), pp. 43~76; 문형표·이지혜, “남북한 통일 시 연금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pp. 33~35; 이철수·민기채, “북한 사회보장과 연금제도 운영실태 분석,” pp. 150~154; 이철수,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 구성 쟁점,” 『동서연구』, 제27권 4호 (2015a), pp. 61~68; 이철수,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요인: 제도와 SWOT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7권 2호 (2015b), p. 131; 이철수,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에 대한 소고,” 『동북아연구』, 제30권 1호 (2015c), p. 146.

로자년금이 북한의 여러 연금에 대한 특례조항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파악하였다.⁶⁾ 공로자년금에 관한 기존 연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년로년금 가입자가 근로기간 중 공훈과 포상을 합산하여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공로자년금 대상으로 적용된다.⁷⁾ 혹은 공로자들의 경우 년로년금 급여를 포함하여 공훈 수준이 추가된 공로자년금을 받는다고 표현되기도 한다.⁸⁾ 또한 은퇴한 공로자의 복지급여는 사회부조, 사회보험, 사회보훈이 차례로 누적되어 합산된 결과이며, 사회보훈은 추가급여의 성격을 갖지만 공로자의 실제 급여는 사회보훈과 사회보험이 더해진 ‘공로자년금’의 단일 형태로 받는다고 해석되기도 한다.⁹⁾ 따라서 은퇴 전 임금 수준에 공훈 수준이 결합되는 급여 산식에 의하여, 은퇴 후의 공로자는 다른 이에 비해 높은 급여를 받게 된다.¹⁰⁾

현재로서는 공로자년금을 언급한 선행연구들이 위 공표를 중심으로 제도 해석을 하고 있어, 이러한 분석 자료의 빈약함은 북한의 공로자년금에 대한 자세한 이해에 실질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공로자년금은 남한의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위상을 갖는 특수계층을 위한 공적연금으로

6) 이철수·민기채, “북한 사회보장과 연금제도 운영실태 분석,” p. 153.

7) 이철수,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 구성 쟁점,” p. 62; 이철수,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요인: 제도와 SWOT분석을 중심으로,” pp. 127~128; 이철수,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에 대한 소고,” p. 147.

8) 이철수·민기채, “북한 사회보장과 연금제도 운영실태 분석,” p. 185.

9) 위의 논문, p. 142.

10) 이철수·이윤진, “북한 사회복지의 법제적 고찰 - 체제·범위·개입,” 『법학연구』, 제27권 2호 (2016), p. 511; 북한의 국가공로자년금과 영예군인연금을 별개의 제도로 파악하여 비스마르크언 모델의 특징인 충성계층 육성을 통한 국가의 핵심 권위예의 증속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민기채, “북한 복지체제의 성격 변화에 관한 연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 비교,” 『2014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자료집』 (2014), p. 866.

이해되기도 하는데,¹¹⁾ 북한의 공로자년금이 남한의 특수직역연금과 등치되어 비교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두 체제에서의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 개념, 연금제도의 적용대상, 급여, 재정, 전달체계 등의 기준에 비추어볼 때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¹²⁾ 즉 공로자년금이 독립된 특수직역연금제도 내지 특별연금제도인지, 아니면 통합된 제도 내에서 부가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연금급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은 일반 년로년금과 차이가 있다. 만약 재정과 전달체계가 기존의 년로년금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면, 독립된 특수직역연금제도 내지 특별연금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반면 재정과 전달체계가 기존의 년로년금 체계 내에 포괄된다면, 부가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연금급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독립된 특수직역연금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¹³⁾과 “동독과 비교할 때 북한의 공로자년금은 특별연금제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합연금제도 내의 급여종류 중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¹⁴⁾으로 구분된다. 나아가 통합연금제도의 급여종류 여부 내지 특수직역연금 여부를 넘어서 “공로자년금은 국민연금이자 특수직역연금이며 동시에 보훈연금의 성격이 혼합한 급여성격을 갖는 제도”라는 하이브리드 성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¹⁵⁾이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공로자년금의 분석에 있어 최대한 폭넓은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제도

11) 이철수·민기채, “북한 사회보장과 연금제도 운영실태 분석,” p. 183.

12) 이철수,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에 대한 소고,” pp. 146~147.

13) 이철수·민기채, “북한 사회보장과 연금제도 운영실태 분석,” p. 183.

14) 민기채·주보혜, “체제전환 전후 동독 특별·부가 연금제도의 변화: 통일 이후 북한 특권층 연금제도의 통합 시나리오 및 방향,” 『보건사회연구』, 제36권 3호 (2016), pp. 541.

15) 이용하 외 공저, 『통일 대비 효율적인 연금통합 방안 연구』 (서울: 국민연금연구원, 2017), p. 186.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추상적 수준이 가장 높은 법령 자료를 넘어 사건까지 확대함으로써 추상적 이해를 보다 제도적 수준의 이해로 낮출 필요가 있다.

공로자년금에 대한 소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공로자년금이 법령과 실제 급여액 간 괴리가 있고,¹⁶⁾ 공로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여러 수준의 높은 급여가 주어진다고 추정하였다.¹⁷⁾ 또한 인터뷰 분석을 통해 공로자년금, 영예군인연금 등의 존재 및 실제 시행이 확인되기도 하였다.¹⁸⁾ 그러나 기존 연구의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분석은 적용대상, 급여수준, 재정, 전달체계라는 체계화된 분석틀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제도와 실태에 대한 일치 수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부재하였으며, 소수의 연구에 불과하고, 인터뷰 시기가 대체로 1990년대 초반이라 최근의 변화된 북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상과 같이 공로자년금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위 법령과 공표 외에 다양한 원전을 바탕으로 한 제도 분석과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한 실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공로자년금에 대한 법령 및 제반 사건들을 바탕으로 한 제도 분석뿐만 아니라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기반을 둔 실태 분석을 병행하였다.

16) 박진·이유수,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및 통합방향』, p. 36.

17) 정기원 외 공저, 『남북한의 인구·보건·사회보장 비교』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p. 47; 이철수, 『북한사회복지 - 반복지의 북한』, pp. 189~195.

18) 이철수·민기채, “북한 사회보장과 연금제도 운영실태 분석,” pp. 170~171.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분석과 질적 인터뷰라는 2가지 방식을 활용하였다. 제도분석을 위하여 문헌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먼저 1991년부터 2017년까지 발간된 북한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남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1946년부터 2016년까지 사회보장과 관련된 북한 법령과 북한 사전(정치사전, 경제사전, 재정금융사전, 조선대백과사전)을 중심으로 북한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질적 인터뷰는 북한 공로자연금의 심층 실태를 분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공로자 연금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모집하였다. 사전 동의 및 연구결과 활용에 대한 동의 등 연구윤리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반구조화 설문지를 통하여 2016년 3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질적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인터뷰 참여자의 인적사항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 인적사항

연번	성	출생년도(연령)	학력	거주지	직업	탈북	입국
1	여	1957년(59세)	대졸	남포	기업회계담당	2002	2002
2	여	1956년(60세)	대졸	함남 함흥	초등교원	2004	2004
3	여	1957년(59세)	대졸	함북 청진	대학교원	2004	2004
4	여	1957년(59세)	대졸	평북 영변	방송	2007	2012
5	여	1949년(67세)	전문대졸	평양	공장노동, 인민반장	2011	2013
6	여	1939년(77세)	고졸	함북 경원	탄광식당노동자	2004	2004
7	여	1949년(67세)	대졸	황북 사리원	공무원	2009	2009
8	여	1952년(64세)	대졸	함북 온성	교원, 조리, 인민위 보급원	2006	2007
9	남	1941년(75세)	전문대졸	함북 경원	노동자, 사진사	2005	2006

10	여	1942년(74세)	고졸	함북 경원	탄광노동자, 수매원	2005	2006
11	여	1938년(78세)	대졸	함북 청진	중학교교원	2005	2006
12	여	1974년(42세)	전문대졸	함북 무산	농장원	2007	2007
13	남	1939년(77세)	대졸	평양	대학교원	2007	2007
14	여	1937년(79세)	고졸	함북 청진	공장노동자	2007	2013
15	남	1971년(45세)	고졸	평남 양덕	군인, 군 인민위 지도원	2007	2007
16	남	1980년(36세)	고졸	함남 함흥	군인	2011	2011
17	남	1971년(45세)	고졸	함북 청진	군인	2011	2011
18	여	1956년(60세)	고졸	함남 함흥	전업주부	2011	2011
19	여	1979년(37세)	고졸	함남 함흥	전업주부	2011	2011
20	남	1986년(30세)	고졸	함북 무산	군인	2012	2012
21	여	1967년(49세)	고졸	함북 길주	주부, 농장원	2008	2008
22	남	1974년(42세)	고졸	양강 혜산	군인	2015	2015
23	여	1943년(73세)	고졸	평양	무역	2014	2015
24	여	1943년(73세)	대졸	함남 영광	주부	2007	2008
25	여	1941년(75세)	고졸	함북 길주	주부	2004	2009

Ⅳ. 북한 공로자년금의 제도

1. 적용대상

북한의 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년금, 유가족년금은 사회보험법에서 구체적인 법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공로자년금은 동법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아 구체적인 법령 내용은 없다. 다만 다른 법령과 사전을 통해 공로자에 대한 내용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공로자년금의 적용대상은 다양한 사전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조선대백과사전에 의하면, “공로자년금은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해 지불

되는 년금의 한 종류로서 국가규정에 지적된 훈장, 명예칭호, 영예칭호, 표창을 받은 사람들과 인민경제의 중요부문에서 다년간 일하면서 국가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들, 오래동안 군사복무를 한 사람들, 국가의 중요한 직책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지불된다”¹⁹⁾

경제사전은 훈장 및 표창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공로자년금대상은 노동과 사회정치활동에서 공훈을 세워 국가로부터 《김일성훈장》, 《김일성상》을 비롯하여 높은 급의 수훈 및 표창을 받는 공로자들이다”고 설명하고 있다.²⁰⁾

재정금융사전은 공로자의 장애기준 및 연령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공로자사회보장년금은 공로를 세운 일군들이 년로년금을 받을 권리가 부여되기전에 노동능력을 완전히 잃었거나 남자 60살, 여자 55살에 이른 사람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았을 때 주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²¹⁾ 특히 “국가는 채취공업부문, 수산부문, 화학공업부문 등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던(지정된 직종)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로자사회보장년금대상의 해당 부류에 속하지 못하여도 공로자사회보장년금지불을 통한 혜택을 돌려준다”고 함으로써 훈장·칭호·표창 수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예외의 경우도 인정하고 있다.²²⁾ 이상과 같이 공민이면 누구나 공로자가 될 수 있는데, 주요 공로자년금 수급권자는 훈장·칭호·표창 수여자, 경제발전 기여자, 장기 군복무자, 정부엘리트라고 할 수 있다.

공로자년금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로자가 되어야 하며, 공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훈에 따른 훈장을 수여해야 한다. 훈장은 “당의 혁명

19)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 482.

20)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 1』 제2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360.

21) 사회과학출판사,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 96.

22) 위의 책, p. 96.

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주체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훈을 세운 개인과 집단, 기관, 단체 등에 수여하는 국가표창의 한 형태"이다. 공로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북한의 훈장을 훈장명, 사례, 급수로 구분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북한의 훈장

구분	훈장명	사례	급
1950	공화국영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영웅)	4회 김정일, 3회 김일성, 2회 리을설 외 8명, 1회 광명성 과학자 101명 등	국기훈장1급
1951	로력영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영웅)	2회 리준구, 1회 계순희, 장성택 등	국기훈장1급
1972	김일성훈장	4회 김정일, 3회 로동신문 등, 2회 오극렬 등, 1회 강반석 등	국기훈장1급
1972	김일성상	2회 김정일, 1회 계순희· 리춘희 등	국기훈장1급
1974	김일성청년영예상		국기훈장1급
1974	김일성소년영예상		국기훈장1급
1993	국제김일성상		국기훈장1급
2012	김정일훈장	김경희 등	국기훈장1급
2012	김정일상	제3차 지하 핵실험 19명 등	국기훈장1급
2012	김정일청년영예상		국기훈장1급
2012	김정일소년영예상		국기훈장1급
1948	국기훈장	※ 국기훈장은 1, 2, 3급 구분	
1951	로력훈장		국기훈장1급
1950	전사영예훈장		국기훈장1급
1950	자유독립훈장		국기훈장1급
1950	이순신장군훈장		국기훈장1급
1973	군사복무영예훈장		
	군수공복무영예훈장		
	철도복무영예훈장		
1973	석탄광업복무영예훈장		
1986	수산복무영예훈장		
1985	친선훈장		
1986	3대혁명붉은기훈장		

구분	훈장명	사례	급
1990	조국통일상	김구, 강경대 외	
2013	조국해방전쟁승리60돛기념훈장		
	공로메달		

- 주: 1) 가장 높은 순위의 훈장명부터 차례대로 나열함
 2) 공로메달은 훈장으로 포함되지 않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입함
 3) 로동신문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빈 셀은 후속 연구를 통해 채워나가야 할 것임

영웅칭호, 상, 훈장 중 일부는 국기훈장²³⁾ 1급의 위상을 가짐으로써 공로자년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국기훈장이란 “혁명과 건설에서 공훈을 세운 일군들과 집단, 기관, 단체, 대상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훈장”으로 정의되며, “1948년 10월 12일에 최고인민회의 명령으로 제정되었으며 제1급, 제2급, 제3급으로 분류되어있다”²⁴⁾

종합하면, 공로자년금의 적용대상은 《김일성훈장》, 《김일성상》등 국가규정에 명시된 훈장·명예칭호·영예칭호·표창을 비롯하여 높은 급의 수훈 및 표창을 받은 공로자 중 노동능력을 완전히 잃었거나 남자 60살, 여자 55살에 이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23) 국기훈장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며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발전과 조국보위사업에 크게 기여한 일군들과 집단, 기관, 단체에 수여한다. 또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지원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시키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일군, 집단에 수여한다. 우리 나라와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고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기여한 외국의 벗들에게도 수여한다. 훈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기대, 설비를 비롯한 여러 대상들에게도 수여한다. 훈장은 중요 회의나 행사, 명절날에 왼쪽가슴에 단다. 수훈을 중앙인민위원회 명령에 따라 한다(백과사전출판사, 1996: 143).

24)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6), p. 143.

2. 급여

공로자를 위한 우대조항은 법률과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주의 헌법 제76조에 따르면,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들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로동법 제75조에 따르면, “국가는 노동과 사회정치활동에서 공훈을 세운 국가공로자들이 노동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들과 그 가족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돌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법 제4조 ‘우대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공로를 세운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사회주의애국희생자가족,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년로자보호법 제5조 ‘공로있는 년로자의 특별보호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혁명투사와 혁명투쟁공로자, 전쟁로병, 영예군인과 공로자 같은 조국수호와 사회주의건설에서 공로를 세운 년로자를 사회적으로 특별히 우대하며 그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피 주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에서도 공로자 우대급여가 확인된다. 정치사전은 “노동능력을 상실한 애국렬사유가족, 영예군인, 후방가족 등 사회보장대상자들에 대한 사회적인호사업은 우리 나라 사회보장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²⁵⁾ 재정금융사전은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들에 대한 사회적인호사업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²⁶⁾ 경제사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능력상실자들가운데서 국가로부터 높은 급의 표창을 받은 공로자들에 한하여 공로자년금을 적용하며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²⁷⁾

²⁵⁾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p. 532~533.

²⁶⁾ 사회과학출판사, 『재정금융사전』, p. 655.

공로자년금에 대한 구체적 급여는 1956년 2월 3일 공표한 <국가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규정 승인에 대하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남 60세 · 여 55세 이상으로서 로쇠자가 작업할 수 있었던 최근 1개월의 봉급과 내각결정 제32호에 의한 유가족금을 포함하여 그들의 최근 봉급(1개월)액에 100%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할 것, 둘째, 노동능력상실년금은 질병 · 손상으로 인한 2개월 이상 노동능력상실자에게 그들의 최근 1개월의 봉급에 100%에 해당하는 현금을 회복할 때까지 지급할 것, 셋째, 공로자가 공로기간에 있어서 보상년금을 받는 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공로자에게 지급하던 년금을 계속 지급할 것, 넷째, 공로자 사망 시 장례금 3만원을 지급하고 유가족들이 년로 · 부상 · 질병으로 노동력 상실 및 사망 시 공로자에게 지급하던 액의 반을 지급할 것, 다섯째, 8.15 전 국내에서 일제 반대 투쟁과 8.15 후 남한 내 반미 투쟁 및 혁명적 투쟁, 민족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정치 · 군사 · 경제 · 과학 · 문화 · 예술 · 기타 사업에서 공훈을 세운 자 및 가족들은 동 결정에 의하여 공로금을 받는다. 또한 공로자년금 대상자는 “높은 급의 식량공급과 치료대우”를 받으며,²⁷⁾ “당과 수령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사회보장을 받고있는 공로자들에게 식량공급, 병치료, 보조금지불 등 특별한 우대”를 해주고 있다.²⁹⁾

이외에도 “공로자년금대상은 노동과 사회정치생활에서 공훈을 세워 국가로부터 공로수훈 및 표창을 받은 정도에 따라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사회보장금”을 받는다.³⁰⁾ 또한 “공로자사회보장년금은 개별적사람들이 세운 공로에 따라 월생활비의 일정한 비율로 주게 된다.³¹⁾ 결국 급여수

27)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 1』, p. 486.

28)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2』, p. 482.

29) 사회과학출판사, 『재정금융사전』, p. 96.

30)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5』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7), p. 232.

31) 사회과학출판사, 『재정금융사전』, p. 96.

준은 공훈 및 표창 수준에 따른 비율의 사회보장금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공로자사회보장년금을 받던 일군들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가족들에게 계속 주게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로자는 유가족연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³²⁾ 또한 “국가는 특히 혁명투쟁 공로자, 국가의 책임적인 지위에서 사업한 간부들, 전사자, 피살자 유가족들의 연금지정에 각별한 관심을 돌린다”고 함으로써 공로자 유가족에 대한 급여를 재확인할 수 있다.³³⁾ “한사람이 두가지이상의 공로자사회보장년금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생겼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가지 사회보장년금을 준다”고 함으로써 중복급여 수급은 제한되고 있다.³⁴⁾ 이상의 공로자연금 관련 주요 법령은 <표 3>과 같다.

〈표 3〉 북한 공로자연금의 주요 법령 조항

구분	법령 내용	법령 조항
적용 대상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사회주의헌법 (2016) 제7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지위는 노동의 성실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노동에서 모범인 사람은 인민의 사랑과 높은 존경을 받는다. 노동에 주인답게 참가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근로자들은 로력영웅칭호와 명예칭호를 비롯한 국가적표창을 받는다.	사회주의노동법 (2015) 제24조
	국가는 노동과 사회정치활동에서 공훈을 세운 국가공로자들이 노동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들과 그 가족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돌린다.	사회주의노동법 (2015) 제75조
	국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공로를 세운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사회주의애국희생자가족,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도록 한다.	사회보장법 (2012) 제4조
	국가는 혁명투사와 혁명투쟁공로자, 전쟁로병, 영예군인과 공로자같은 조국수호와 사회주의건설에서 공로를 세운 년로자를 사회적으로 특별히 우대하며 그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피 주도록 한다.	년로자보호법 (2012) 제5조

32) 위의 책, p. 96.

33)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28, 29』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1), p. 205.

34) 사회과학출판사, 『재정금융사전』, p. 96.

구분	법령 내용	법령 조항
급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국가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규정을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1) 남60세, 여55에 이상으로서 로쇠자가 작업할 수 있었던 최근 1개월의 봉급과 내각결정 제32호에 의한 유가족금을 포함하여 그들의 최근 봉급(1개월)액에 100%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할 것	국가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규정 승인에 대하여 (1946)
	(2) 노동능력상실년금은 질병, 손상으로 인하여 2개월 이상 노동능력을 상실한 자에게 그들의 최근 1개월의 봉급에 100%에 해당하는 현금을 회복할 때까지 지급할 것	
	(3) 공로자가 공로기간에 있어서 보상년금을 받는 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공로자에게 지급하던 년금을 계속 지급할 것	
	(4) 공로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의 장례금으로 3만원을 지급하고 그의 유가족들이 년로, 부상, 질병으로 노동력을 상실 및 사망하였을 시는 공로자에게 지급하던 액의 반수를 지급할 것	
	(5) 8.15 전 국내에서 일제에 반대하는 투쟁과 8.15 후 남한에서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 및 혁명적 투쟁, 민족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정치, 군사, 경제, 과학, 문화, 예술, 기타 사업에서 공훈을 세운 자 및 가족들은 동 결정에 의하여 공로금을 받게 된다.	

주: 괄호 안은 법령의 최근 개정년도

3. 재원

“사회보험료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능력상실자와 년로보장자를 물질적으로 방조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다(국가예산수입법 제44조). 일반 노동자·사무원·농민의 경우 년로연금의 대상자인데, 공로자연금 역시 년로연금과 같이 사회보장의 하나로 보고 국가예산 가운데 사회보장사업비에서 지출한다. 사회보장사업비란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들이 노동능력을 잃었거나 년로한 경우 또는 사망하였을 때 본인과 그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며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하여 국가예산에서 지출되는 자금”이다.³⁵⁾ 따라서 공로자연금의 재원도 통합 사회보험료로 조성되며 국가예산의 사회보장사업비 항목에서 집행된다.

35) 사회과학출판사, 『재정금융사전』, p. 654.

4. 전달체계

공로자연금의 전달체계는 사회보장법에 명시된 일반적인 연금의 전달 체계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보장연금의 신청은 “공민이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관·기업소·단체는 사회보장을 받으려는 대상이 제기되었을 경우 사회보장신청문건을 작성하여 대상에 따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또는 해당 인민위원회에” 제출한다(사회보장법 제10조).

사회보장신청문건이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에 접수되면,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사회보장법 제12조), “사회보장자로 등록된 공민에게는 사회보장금증서”가 발급된다(동법 제13조).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사회보장자등록정형을 그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리, 읍, 노동자구, 동사무소에 알려”준다(동법 제14조). 이를 통해 동사무소 단위에서 실제 구체적인 업무가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보장연금의 수령은 재정은행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를 거쳐(동법 제17조) 거주지역의 리·읍·노동자구사무소 혹은 동사무소에서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사회보장자의 “거주지, 가족 수, 기타 생활상 변동이 생긴 경우 5일 내에 해당 리, 읍, 노동자구, 동사무소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동법 제16조 제2항)을 볼 때, 연금지급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법령과 사전에 기초하여 공로자연금에 대한 적용대상·급여·재원·전달체계를 종합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북한 공로자연금의 제도

구분	내용		
적용대상	《김일성훈장》, 《김일성상》등 국가규정에 지적된 훈장, 명예칭호, 영예칭호, 표창을 비롯하여 높은 급의 수훈 및 표창을 받은 공로자 중 노동능력을 완전히 잃었거나 남자 60살, 여자 55살에 이른 사람		
급여	급여종류	공로자연금, 공로자로동능력상실연금, 공로자유가족연금	
	급여수준	년금	공로자연금: 공훈 및 표창 수준에 따른 급여 공로자로동능력상실연금: 최근 봉급(1개월)의 100%를 회복시까지 지급 공로자유가족연금: 공로자가 공로기간에 있어서 보상년금을 받는 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공로자에게 지급하던 년금을 유가족에게 계속 지급
		보조금	공로자유가족일시금: 최근 봉급(1개월)의 100% 공로자장례보조금: 3만원 공로자유가족 노동능력상실보조금 및 장례보조금(공로자의 가족의 노동능력상실 및 사망 시) : 공로자연금의 50%
재원	통합 사회보험료		
전달체계	통합 전달체계		

주: 다만 급여수준은 1956년 2월 3일 공포한 〈국가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규정 승인에 대하여〉에 기초한 것이므로, 최근과는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함

자료: 백과사전출판사(1995, 1996, 1997, 2001),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1985), 사회과학출판사(1973), 사회과학출판사(1995), 사회주의헌법, 사회주의로동법, 사회보장법, 근로자보호법 및 ‘국가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규정 승인에 대하여’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V. 북한 공로자연금의 실태

1. 적용대상

먼저 공로자연금의 위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래 진술에 따르면 공

로자년금이 별도의 특별연금제도로 이해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이 되었던 보안을 했던 보위원을 했던 똑같다고요. 년금 받는 것은 국가적인 혜택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이 공무원을 해서 공무원년금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없다고요. 똑같은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연금 받는 액수는 동일합니까?) 액수는 자기가 세운 공로에 따라 좀 다른 거죠. 내가 국가에 특출한 공로를 세웠다면 국가가 그만큼 더 주는 거고, 어쨌든 20년 이상 노동자를 했던 뭘 했던 그 사람은 국가에 기여한 걸로 되잖아요. 그만큼 자신의 노동력을 받쳐서 했던 뭘 했던 분야가 서로 다르다 뿐이지 기여한 것은 똑같은 거니까요. 똑같은 혜택을 받는 거죠. 내가 남보다 더 특출하게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는 여기로 말하면 가산점이 좀 붙겠죠. (남/45세/청진/군인/2011년 탈북)

공로자년금은 별도의 연금제도로 보기 어려우며 모든 근로자·군인·공무원 등은 단일 연금체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공로자에게는 국가가 그만큼 혜택을 주기 위해 통합된 연금제도 하에서 특별한 급여체계가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높은 훈장이 김일성훈장이죠. 그 다음에 김일성 표창, 그 다음이 국기훈장 1급, 로력훈장, 국기훈장 2급, 국기훈장 3급. (여/67세/사리원/공무원/2009년 탈북)

북한의 훈장 순서를 말하면 로력영웅 칭호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국기훈장 1급이 있고, 그 다음에 로력훈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국기훈장 2급이 있고, 그 다음에 3급이 있고, 그 다음에 공로메달이 있고, 공로메달이 제일 하질이죠. 그렇게 6가지가 있어요. 군대에 보면 리순신훈장도 있고 그렇긴 하지요. (중략) 김일성훈장 있죠. 그것은 뭐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나눠가지는 거니까. (중략) 그건 꿈에도 생각 못하죠. 우리 군(郡)이 30만 명이 되는데, 김일성훈장 탄 사람이 없어요. (남/75세/경원/노동자·사진사/2005년 탈북)

가장 위에는 김일성훈장이예요. 그 다음에 로력영웅 영웅칭호 받는 사람들. 로력영웅도 있고 공화국영웅도 있고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로력영웅이라는 건 일 잘한 사람들이고 공화국영웅은 나라에 특출한 공로를 세운 사람들. (중략) 그 다음에 국기훈장 1급이에요. 그 다음에 2급, 3급이에요. (남/45세/양덕/군인/2007년 탈북)

영웅메달, 김일성훈장, 그리고 공화국영웅 칭호, 국기훈장 이라고 있고, 1급부터 3급까지 있어요, 이것도. 1급이 최고로 높은 것이고. 1급은 로력영웅 이라고 또 있거든요. (남/30세/무산/군인/2012년 탈북)

제도상으로는 다양한 훈장이 서열대로 있다. 진술을 종합하면 북한 훈장은 서열상 김일성훈장, 김정일훈장, 국기훈장 1급, 로력훈장, 국기훈장 2급, 국기훈장 3급, 그리고 기타 공로메달 1·2·3급 등의 순으로 나열할 수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름이 포함된 훈장을 받을 시 그 급수는 국기훈장 1급이 되어 공로자년금 대상에 포함된다.

‘골고루 메달’이라 해요, 북한에서는. 왜 ‘골고루 메달’이냐. 나는 지금 국기훈장 2급타고 메달까지 총 3개란 말이에요. 4개부터 되는데, 3개 탔단 말이에요. 그럼 나한테 하나 더 주려고 애매 하니깐, 또 공로메달 하나 신청을 해요. 그럼 4개 돼요. 너 나가서도 600g에 60원 타라고 서로 어울려서 도와주죠. 그 다음에 2개밖에 없다 하면 또 추천해서 타고. 대학에 당 위원회가 있어요. 당 위원회에서 하니깐 “이 사람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타고. (남/77세/평양/대학교원/2007년 탈북)

공로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서로 도움을 주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는 진술이다. 또한 대학교원은 상대적으로 일반 노동자보다 국기훈장과 공로메달을 받기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교원은 공로자 기준을 충족하여 공로자년금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교원들은 30년 교원 생활을 하면 600에 60을 줘요. 우리 둘째 언니도 평양에서 교육자였는데, 600에 60을 벌었어요. (중략) (언니는 교원 30년을 해서 600에 60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교원 30년을 해서 받으신 건지, 아니면 교원을 30년 정도 하면 국기훈장 1급을 주니까 받는 건지?) 그게 다 동반되죠. 30년 되면 그런 것을 다 타게 만드니까. (여/64세/온성/주부·노동자/2006년 탈북)

교원들 30년이면 600에 60 받는다. 또 나도 적용 받았고. (여/78세/청진/중등교원/2005년 탈북)

초·중등교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반 노동자에 비해 국기훈장과 공로메달 수여가 용이하다. 교원으로 30년 이상 근속 시 공로자년금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당에서 보기에 이 공장이 잘 했다고 할 경우, 거기에 훈장을 배정해 주거든요. 국기훈장 1급이 2명, 3급은 3명, 공로메달은 몇 개 이렇게 주거든요. 그거를 당에서 통보 내려오면, 간부들 모아 놓고 “우리 공장에 이만큼이 떨어졌는데 지배인 하나 가지시오, 기사장 하나 가지시오, 지도원 하나 가지시오” 하면 노동자들은 찾아줄 게 없거든요. 북한이 항상 그렇죠. 간부들이 나눠 먹는 훈장이 되고 말지. 우리 공장이 600명이 있었는데, 노동자가 탄 게 불과 10명이 안 돼요. 하나라도 타 본 사람이. 간부들은 거의 다 되고. (중략) 600에 60원씩 타는 사람이 불과 5%도 안 될 거예요, 600명 가운데. (남/75세/경원/노동자·사진사/2005년 탈북)

유급당원의 경우 일반 노동자에 비해 국기훈장과 공로메달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다.

공로자 훈장이라는 것은 명절 때마다 주는데, 김일성 생일, 노동당 창립일 뭐 이럴 때 가끔가끔 주는데 정말 회사에 겨우 1명 정도? 3급 이상짜리 나오는 것은 거의 (150명 중) 1명도 되나 마나야. (여/59세/남포/회계담당/2002년 탈북)

북한에서 노동자가 훈장으로 600에 60을 탄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노동자에게 누가 훈장 줘니까? 내가 자라는 아니지만, 꾸준히 일을 잘했는데, 공로메달 2개 탔는데,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그것도 일반노동자들은 40년 일해도 공로메달 못 타요. (남/75세/경원/노동자·사진사/2005년 탈북)

600g에 60원이라는 것의 기준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근데 군대 훈장은 여러 개 받았지요. 그런데 군대 기준은 또 달라요, 훈장이. 그러니까 공화국영웅, 영웅에 국기훈장 1급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급에서만 600g에 6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준이 너무나 국부적으로 극소화되어 있지요. 많이 못 받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 오빠도 거기서 고위급으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00g에 60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여/64세/온성/주부·노동자/2006년 탈북)

김일성표창을 하나 받으면 공로자예요. 그거 받기가 하늘에 별 따기거든요. (중략) 그 상을 받으면 그 사람 일생 먹고살아요. (여/60세/함흥/초등교원/2004년 탈북)

로력훈장을 받았다고 하면 배급 600그램에 60원을 줬어요. 로력훈장은 군(郡)에 1명도 받기 힘들어요. 내가 한 직장에서 30년을 너무 일 잘해서 뉴스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 주는 거예요. (여/49세/길주/농장원/2008년 탈북)

김일성청년영예훈장이라든가 김일성청년영예상을 받으면 1급이에요. 600에 60이에요. 그리고 국기훈장 1급을 받는다고, 국기훈장 1급이라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이고, 청년훈장도 하늘의 별따기이고, 그 다음에 로력영웅. 로력영웅도 별따기 짝아요. 그런 분들은 600에 60이에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내놓고는 일반에서는 뭐 직종에 관계없이 년로보장은 다 비슷해요. (여/49세/길주/농장원/2008년 탈북)

반면 일반 근로자들이 국기훈장을 수여받기는 쉽지 않다. 공로메달을

2개 수상하였으나 추가적으로 국기훈장을 수여받지 못해 공로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례도 있다.

농장원들도 일을 열심히 잘 하잖아요. 몇 공수 하듯이 일을 잘하면 국기훈장 1급, 2급 주는 게 있어요. 1급 받고 2급 받고 그러면 공로자이잖아요. (여/42세/무산/농장원/2007년 탈북)

농장에서 공로를 세워서 국기훈장 1급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60원을 받고. (남/42세/혜산/군인/2015년 탈북)

농민들도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공로자가 될 수 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누구나 급여대상에 대하여 제도와 실태를 비교하면, 누구나 공로자가 될 수 있다는 점과 공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기훈장 또는 공로메달을 수상해야 한다는 점, 연령기준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공로자의 노동능력상실 시 공로자년금 적용대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2. 급여

1) 공로자년금 급여수준

공로 있는 사람들은 60원 줬으니까. (남/75세/경원/노동자·사진사/2005년 탈북)

남편이 보훈대상이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공로자. 그러다보니깐 그 사람이 살아서 년로보장을 받으면 60원을 가지게 돼 있어요. (여/60세/함흥/초등교원/2004년 탈북)

훈장 받은 정도에 따라 주기 때문에, 국기훈장을 두 개 받겠나 세 개 받겠나 여기에 따라서 기준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중략) 대학 선생들은 거의 은퇴할 때 쯤 되면 다 600에 60 대상이 거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훈장을 다 받으니까.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공로자는 자격을 인정받으면 제일 최하가 600에 60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러나 일반 노동자는 최하 15원부터 시작.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년로보장 받아도 공로자인 경우에는 쌀을 600g줘요. 그런데 공로자가 아닌 경우는 300g 주거든요. (여/67세/평양/노동자/2011년 탈북)

국기훈장 1급 탔을 때는 국가에서 돈 60월에 배급 600g줬죠. (여/67세/사리원/공무원/2009년 탈북)

훈장이 몇 개인가에 따라서 600에 60이라고 있어요. 퇴직연금처럼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쉬운 거는 아닌데, 나 그만큼 공이 많다 해서 가슴에 이렇게 다 달잖아요, 무겁게. 훈장가격이에요, 그게. (남/30세/무산/군인/2012년 탈북)

년로보장비를 더 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공로있는 사람들. 국기훈장 1급 있는 사람들은... 그 때 배급이 년로보장 받는 사람들은 300그램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기훈장 1급이 있는 사람들은 600그램에 60원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배급도 두 배, 돈은 한 네 배. 이렇게 되었죠. (남/75세/경원/노동자·사진사/2005년 탈북)

김일성 시대를 포함하여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에는 공로자가 될 경우 기본적으로 월 60원, 일 배급 600g의 년로보장을 받았다. 공로자에게 배급되는 현금급여는 공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배급량은 수훈 및 표창의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600g이었다.

3급 타서는 뭐 없습니다. (중략) 공로자년금은 하나일 때는 김일성훈장을 탔거나 김일성표창 그 다음에 로력훈장, 국기훈장 1급 탔을 때, 이럴 때는 하나만 타도 대상이 됩니다. 국기훈장 2급 탔을 때는 다른 공로메달 붙어서 4개가 돼서 그거까지 5개가 되어야 그 다음에 연금대상이 되는데 그건 돈이 40원이죠. (중략) 국기훈장 2급에 메달 되었을 때는 배급은 600g 주지만 돈은 40원 줍니다. (여/67세/사리원/공무원/2009년 탈북)

국기훈장이 2급에 국기훈장 3급이 들어가 있거나, 만약 군대에서 받았다면 전사영예훈장 2급·3급. 그것도 1급이 있어요. 1급은 600에 60이에요. 그런데 2급·3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2급·3급을 받았거나, 공로메달이 또 있거나 이렇게 해서 국기훈장 2급에 쓸데없는 메달이 4개 들어가 있으면 5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때 600에 40원은 줬어요. (여/49세/길주/농장원/2008년 탈북)

김일성훈장, 김정일훈장, 국기훈장 1급의 급수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3급까지는 다 받아요. 위는 말할 것도 없고. 3급 이상 받아야지 600g에 60원 받을 수 있어요. (여/59세/남포/회계담당/2002년 탈북)

공로자 중에서도 훈장의 급수와 개수에 따라 년로년금액의 차이가 있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 시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기훈장 1급 1개는 일 배급 600g에 월 60원, 국기훈장 2급 1개에 공로메달 4개가 합산 되었을 때는 일 배급 600g에 월 40원이다. 국기훈장 3급 하나만으로는 공로자년금 대상이 되기 어렵다.

국기훈장 2급인데 2개 탄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600g에 60원 줬지. 공로에 따라서. (중략) 국기훈장 3급타고 공로메달 뭐 타고 여러 개 타면 되고. (여/60세/함흥/초등교원/2004년 탈북)

공로메달이 다섯 개 있으면 돼요. 국기훈장 3급에 붙어서 공로메달이 4개 있으면 해당 되어서 600에 60원 받지요. (중략) 국기훈장 2급은 공로메달 2개만 있으면 돼요. 1급하고 로력훈장은 거저 되고. (남/75세/경원/노동자·사진

사/2005년 탈북)

국기훈장 1급만 받으면 다른 것이 없어도 600에 60 벌이는 해요. 그 다음에 국기훈장 3급 외에 훈장 몇 개에 메달을 몇 개 해서 다섯 개 이상을 하면 또 600에 60 벌이를 하고, 그게 다 부류가 달라요. 김일성 표창을 타면 또 어떻게 되고, 그게 다 다른데, 그냥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한 달에 20원 벌이를 하죠. 20원을 받고, 배급을 하루에 200그램인가 300그램 인가를 받아요. (남/42세/혜산/군인/2015년 탈북)

위 진술은 국기훈장 2급이 2개 이상이거나 국기훈장 3급에 공로메달 여러 개를 보유하면 국기훈장 1급 1개 이상 보유시 받는 60월에 600g을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기훈장 1급 하나면 600g에 60원이 되어요. 그런데 2급부터는 거기에 훈장이 3개가 팔려야 되요. 그래야 배급 600g에 그 때 당시 노동자들이 700g을 탈 때 600g을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주는 거예요. (여/64세/온성/주부·노동자/2006년 탈북)

국기훈장 2급이 한 세 개쯤 되면 1급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받기가 쉽지 않죠. 이게 북한에 최고 훈장이예요. 1급까지가. 국기훈장 1급만 받아도 600g에 60원이예요. 이건 아무나 주는 건 아니예요. 김일성훈장 그리고 노력영웅들 그 다음에 국기훈장 1급. (남/45세/양덕/군인/2007년 탈북)

위의 진술은 국기훈장 2급 1개에 훈장 3개 보유시 혹은 국기훈장 3개 이상을 보유하면 국기훈장 1급 1개 이상 보유시의 년로년금액수와 동일하게 받는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이상의 공로자년금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최소 훈장 요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국기훈장 1급 1개, 둘째, 국기훈장 2급 2개, 셋째, 국기훈장 2급과 공로메달 4개, 넷째, 국기훈장 3급 2개와 공로메달 4개, 다섯째, 국기훈장 3급 2개와 기타

훈장 그리고 공로메달 4개일 경우에는 최소 훈장 요건에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 공로자년금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최소 훈장 요건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북한 공로자년금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최소 훈장 요건

유형	국기훈장	공로메달
1	국기훈장1급	0개
2	국기훈장2급 2개	0개
3	국기훈장2급 1개	4개
4	국기훈장3급 2개	4개
5	국기훈장3급 2개 + 기타훈장	4개

주: 인터뷰 결과에 기초하여 국기훈장과 공로메달로만 간명하게 구성하여 최소 훈장 요건을 제시함. 이에 김일성훈장, 김정일훈장, 로력훈장 등 국가훈장 1급에 해당되는 다양한 훈장들은 제시하지 않음

그 후부터는 아마 바뀌었어요. 보조금 주는 것 보니까 70원 줄 수는 없는 것이고, 700원, 500원, 1,200원 이렇게 주는 거 박서는 옛날에 1,200원, 2,000원 주던 할머니는 옛날에 간부를 했더라고요. (남/36세/함흥/군인/2011년 탈북)

61살까지 일했는데 국기훈장 몇 개 타고 로력훈장 몇 개 타고했다 이러면 국가에서 그 사람에서 나오는 '국기3급 훈장 하나에 로력훈장 하나 내면 천 육백 원이다, 국기훈장 두 개에 로력훈장 두 개면 천 팔백 원이다' 이렇게 부류가 다 다릅니다. (중략) 가장 위가 로력훈장입니다. 그 다음에 국기훈장 1급, 2급, 3급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 표창. (중략) 내가 직접 동사무소 가서 보고 친구들 타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로력훈장 하나에 다른 공로자 훈장 일 잘해서 주는 거 몇 개 딸리면 (중략) 2,400원까지는 봤습니다. 그 다음에 1,800원, 1,400원, 1,200원 각이합니다. (여/77세/경원/식당노동/2004년 탈북)

2002년 7·1 조치 이후에 평균생활비가 3천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3천원에 30% 계산하면 900원 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님이 (한국전쟁 참전) 영예군인이신데, 상이군인. 상이군인은 2천원 받았어요. 상이군인은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깐 2천원이라고 생각할 때는 2천원은 몇 % 한 7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공로자 600g에 60원을 받던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는 똑같이 올랐다는 거죠. (여/59세/남 포/회계담당/2002년 탈북)

훈장 있다 해서 (일반 은퇴자가) 15원씩 타는 거 로임이 우리는 63원이었습니다. 24원을 탔던가? 24원을 탔습니다. 2002년 개혁 후 800원을 탔습니다. (여/77세/정원/식당노동/2004년 탈북)

공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1,200원, 1,500원, 그리고 군부대에서 간부로 있던 장교 급이 이런 사람들이 타는 거보니깐 3,000원 정도 타고. (여/67세/평양/노동자/2011년 탈북)

공로가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쌀을 600g 타느냐 300g 타느냐에 관계되고 돈은 내가 얼마큼 탔는지 거기에 한해서 돈을 2,500원 타는 사람도 있고 1,200원 타는 사람도 있고. (여/67세/평양/노동자/2011년 탈북)

어머니는 전쟁 시기에 군수공장에서 일하셨어요. 그니까는 국가가 말하는 공로 퇴직자에 해당하는 분이죠. 공로 퇴직자는 퇴직할 때 연금 받는 액수가 다른 사람들 보다 조금 많고 (중략) 공로로 나오신 분들은 600g, 평생 죽도록 너는 600g을 국가가 보장한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냥 직장에서 노동 생활하다가 나온 사람은 300g에 퇴직한 이후부터 받는 연금 액수가 있고요. 공로자로 나오신 분들은 국가가 죽을 때까지 보장해준다는 그거에다가 연금이 있는데 액수가 그저 나오신 분보다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한 600원? 500원 이정도 타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2002년 화폐개혁 이후) 800원 정도 타셨거든요. (중략) 저희 어머니는 (국기훈장) 2급이 있어요. 2급이 있어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예요. 공로메달도 있고. (여/59세/영변/방송/2007년 탈북)

(로임을) 1,030원 받았는데, (연금은) 한 700원쯤 탄 것 같아요. (여/64세/온성/주부·노동자/2006년 탈북)

아빠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제대 된 다음에 공로자협회에서 비서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모인 데거든요. 저희 아빠가 비서한 그 단위 사람들이 다 60~70대 어르신들인데, 그 분들이 다 학교 교장을 하다가 그만 두셨거나, 무슨 무엇을 하시다가 나오신 다 이런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예요. 600g 이상 다 2천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이였거든요. 그 조직이. (여/59세/영변/방송/2007년 탈북)

이상과 같이 김일성 시기에는 대체로 공로자에 대한 연금액수가 월 60원을 기준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면,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공로자에 대한 연금액수는 월 800원부터 1,200원, 1,400원, 1,500원, 1,800원, 2,400원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7·1조치 이후 공로자년금 급여수준이 상승하였다. 예를 들어 한 국전쟁 참전 지휘관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자유독립훈장과 국기훈장 1급을 수여받은 제대군인(대좌 전역) 공로자의 연금액은 7·1조치 이후 2,500원으로 같은 시기의 일반 노동자 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공로자가 제대 이후 지역 공로자협회의 비서를 하면서 만난 다른 공로자들의 연금액 수준이 2,000원대였다는 사실로 미루어보면 7·1조치 이후에도 공로자년금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뷰 결과에 따라, 공로자의 공훈에 따른 급여수준을 종합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본 연구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훈장과 김일성 시대의 급여수준을 연동한다면, 대개 1부류(600/60), 2부류(600/40), 3부류(그 이하)로 구분할 수 있다.

<표 6> 공로자 공훈에 따른 급여 수준

참여자	시기	공로자 기준	급여(월), 배급(일)	비고
21	김일성	국기훈장2급 1개+기타메달 4개	40원, 600g	
1	7·1조치전	혁명열사	60원 이상, 600g	공로자 유가족

참여자	시기	공로자 기준	급여(월), 배급(일)	비고
		Ⅱ (빨치산, 한국전쟁 참가자)		연금수령
1	7·1조치전	애국열사(대남공작원, 사회주의 로동 수행중 사망)	60원 이상, 600g	
1	7·1조치전	국기훈장 3급 이상	60원, 600g	
2	7·1조치전	김일성표창	60원, 600g	공로자 유가족 연금수령 (40원)
2	7·1조치전	국기훈장 1급 1개 이상	60원, 600g	
2	7·1조치전	국기훈장 2급 2개 이상	60원, 600g	
2	7·1조치전	국기훈장 2급+국기훈장 3급 +공로메달 여러개	60원, 600g	
3	7·1조치전	상급 국기훈장+하급 훈장 여러 개	60원, 600g	
4	7·1조치전	국기훈장 2급+공로메달	60원, 600g	
5	7·1조치전	국기훈장 등 훈장 5개 이상	60원 이상, 600g	
7	7·1조치전	김일성훈장 1개	60원, 600g	
7	7·1조치전	국기훈장 1급 1개	60원, 600g	
7	7·1조치전	로력훈장 1개	60원, 600g	
7	7·1조치전	국기훈장2급 1개+공로메달 4개	40원, 600g	
8	7·1조치전	국기훈장 1급 1개	60원, 600g	
8	7·1조치전	국기훈장 2급 1개+기타훈장 3개	60원, 600g	
9	7·1조치전	국기훈장 1급 1개 혹은 로력훈장 1개 이상	60원, 600g	
9	7·1조치전	국기훈장 2급 1개+공로메달 2개	60원, 600g	
9	7·1조치전	국기훈장 3급 1개+공로메달 4개	60원, 600g	
13	7·1조치전	국기훈장 2급+공로메달 4개 이상	60원, 600g	
15	7·1조치전	국기훈장 1급	60원, 600g	
15	7·1조치전	국기훈장 2급 3개	60원, 600g	
15	7·1조치전	국기훈장 3급 5개	60원, 600g	
16	김일성	로병, 당간부30년 이상, 유공자, 국기훈장 보유	60원, 600g	
20	김정일	국기훈장 2급, 군공메달, 복무메 달, 복무훈장, 공로메달, 공로훈장 등 다수	60원, 600g	
21	김일성, 김정일	국기훈장 1급 1개	60원, 600g	

참여자	시기	공로자 기준	급여(월), 배급(일)	비고
22	7·1조치전	국기훈장 1급 1개	60원, 600g	
22	7·1조치전	국기훈장 3급+기타훈장/메달 4개	60원, 600g	
22	7·1조치전	전쟁참가메달 (한국전쟁참전군관)	80원, 600g	
4	김일성	국기훈장 1급, 자유독립훈장 (한국전쟁 참전, 32년 복무 후 대좌 전역)	2,500원, 600g	
4	7·1조치후	국기훈장 2급+공로메달	800원, 600g	
14	김정일	국기훈장 2급+기타훈장 3개 이상 (한국전쟁기 군수공장 노동자)	800원	
22	7·1조치후	국기훈장 1급 1개	800-1,000원, 600g	
22	7·1조치후	국기훈장 3급+기타훈장/메달 4개	800-1,000원, 600g	
6	7·1조치후	기타 훈장 여러개	1,200-1,400원 등 다 양, 600g	
11	7·1조치후	국기훈장 3급 1개+공로메달 2개	1,200원, 600g	
5	7·1조치후	국기훈장 등 훈장 5개 이상	1,200-2,500원 등 다양, 600g	
6	7·1조치후	로력훈장 1개+국기훈장 1개	1,600원, 600g	
6	7·1조치후	로력훈장 2개+국기훈장 2개	1,800원, 600g	
22	7·1조치후	전쟁참가메달 (한국전쟁참전군관)	2,000원, 600g	
6	7·1조치후	로력훈장 1개+기타훈장 다수	2,400원, 600g	유가족연금은 혁명유가족(전 사자, 대남공작 원)에 한함
14	김정일	국기훈장 포함 훈장 다량 보유 (상좌 전역 제대 군인)	2,500원	

주: 1) 급여액이 가장 낮은 순부터 기입

2) 인터뷰 시 년로연금 수급자의 배급량에 대해 따로 진술 하지 않은 경우, 연금액만 기입하였음. 따라서 특정 대상자가 연금액만 있고 배급량이 없다고 해서 배급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님

32년간을 군복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대됐죠. (중략) 아빠가 차려지는 돈이 2,500원이었어요. 북한 돈으로. 메달 받는 연금이. 그 수첩에 의하면. 그 런데 그 돈을 쥐야 내 돈이죠. 쌀도 못 사먹어요. (중략) 좀 너무 어렵게 살고 고난의 행군을 할 때니깐 그나마 좀 받아보려고 동사무소 여기로 말하면 주

민센터 같은 데 몇 번 다녀왔거든요. 아빠가 아파서 누워계시니깐. 없어요. 매번 가봐야 거기에 찍혀진 액수 2,500원이라는 것을 알죠. (여/59세/영변/방송/2007년 탈북)

위 진술에 의하면 공로자연금 수급 대상이어도 실제로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공로자년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사람들은 600원, 700원 보통 타는데 나는 800원 탔어요. 왜 그렇게 탔냐 하면 국기훈장 2급도 있었고 전쟁 시기에 군수품공장에서 일했다 해서 메달이 하나 있었어요. 전쟁승리 기념일을 맞이해서 메달 하나 또 타고, 그래서 훈장이 한 3~4개 됐어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800원 탔단 말입니다. 그 돈이라 해 봤자 국수 한 사리밖에 안되는데. (여/79세/청진/공장노동자/2007년 탈북)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공로자연금의 급여수준이 상승하였으나 장마당의 등장으로 실질가치가 하락하여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공로자연금 급여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김일성 시대(1990년 초반까지), 김정일 시대(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쳐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까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전체 인터뷰 참여자들의 공로자연금의 급여수준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시기와 대상에 따른 공로자연금의 급여수준 및 급여주기

참여자	시기	수급권자	급여수준	급여주기
11	7·1조치전	교원	60원, 600g	
6	김일성	공로자(훈장 급수 불명)	24원 (마지막월급40%)	간헐적 지급
2	김일성	유가족 (공로자(교원)사망 후 그 배우자)	40원	97년까지 지급 후 계속 미지급

참여자	시기	수급권자	급여수준	급여주기
7	김일성	공로자(국기훈장2급+공로메달4개)	40원, 600g	
8	김일성	공로자(국기훈장 1급 1개 혹은 국기훈장2급+기타훈장 3개)	60원, 600g	
7	김일성	공로자(국기훈장 1급)	60원, 600g	
9	김일성	공로자(국기훈장 1급)	60원, 600g	
2	김일성	공로자(교원)	60원	94년까지 지급
8	김일성	교원 (30년 이상 재직, 대개 훈장 동반)	60원, 600g	
9	김일성	제대 군인(상좌(중령급) 이상)	월급의 80%, 600g	
12	김일성	공로자	60원, 600g	
13	김일성	공로자 (국기훈장2급+공로메달4개 이상)	60원, 600g	
16	김일성	공로자(로병, 당간부 30년 이상, 국기훈장 보유자)	60원, 600g	
20	김정일	공로자(국기훈장 2급, 군공메달, 복무메달, 복무훈장, 공로메달, 공로훈장 등 다수)	60원, 600g	
22	7·1조치전	공로자(국기훈장 1급)	60원, 600g	
22	7·1조치전	공로자 (국기훈장 3급+기타훈장/메달 4개)	60원, 600g	
4	7·1조치전	공로자(한국전쟁시기 군수공장 노동자, 국기훈장 2급+공로메달)	60원, 600g	90년대 이후 미지급
15	7·1조치전	공로자(국기훈장1급 1개 혹은 국기훈장2급 3개 혹은 국기훈장3급 5개)	60원, 600g	
22	7·1조치전	전쟁로병 (한국전쟁참전군관,전쟁참가메달)	80원, 600g	지급
3	7·1조치전	제대 군인(장성)	220-230원, 600g	계속 지급
4	7·1조치후	공로자(한국전쟁시기 군수공장 노동자, 국기훈장 2급+공로메달)	800원, 600g	미지급
6	7·1조치후	공로자(훈장 급수 불명)	800원	간헐적 지급
14	7·1조치후	공로자 (국기훈장 2급+기타훈장 3개 이상, 한국전쟁기 군수공장 노동자)	800원	4-5회 지급
22	7·1조치후	공로자(국기훈장 1급)	800-1,000원, 600g	

참여자	시기	수급권자	급여수준	급여주기
22	7·1조치후	공로자 (국기훈장 3급+기타훈장/메달 4개)	800-1,000원, 600g	
2	7·1조치후	공로자 (노력훈장, 국기훈장2급 이상)	1,200원	
11	7·1조치후	공로자(교원 35년 근무, 국기훈장3급+공로메달2개)	1,200원, 600g	1회 지급
16	7·1조치후	간부	1,200-2,000원, 600g	
16	7·1조치후	공로자	1,200원	
5	7·1조치후	공로자	1,200원	
5	7·1조치후	공로자	1,500원	
23	7·1조치후	일반 노동자(무역회사)	1,800원	밀려서 지급
1	7·1조치후	영예군인(한국전쟁 참전)	2,000원	밀려서 지급
22	7·1조치후	전쟁로병(한국전쟁참전군관, 전쟁참가메달)	2,000원, 600g	지급
9	7·1조치후	공로자(국기훈장 1급)	2,000원대, 600g	
14	7·1조치후	공로자(상좌 전역군인, 국기훈장 등 훈장다량보유)	2,500원	3-4회 지급
4	7·1조치후	공로자(한국전쟁 참전, 32년 장교 (대좌) 복무, 국기훈장 1급, 자유독 립훈장 등 훈장 다수 보유)	2,500원, 600g	미지급
5	7·1조치후	제대 군인	약 3,000원	

주: 1) 급여액이 가장 낮은 순부터 기입

- 2) 인터뷰 시 년로연금 수급자의 배급량에 대해 따로 진술 하지 않은 경우, 연금액만 기입하였음. 따라서 특정 대상자가 연금액만 있고 배급량이 없다고 해서 배급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님

2) 공훈 및 표창에 따른 급여의 원리

국가에 특출한 공로를 세웠다면 국가가 그만큼 더 주는 거고. (남/45세/청진/군인/2011년 탈북)

돈은 그 사람이 공로자인가 국기훈장 몇 급짜리 있어야 되고 훈장이 5개 이상 되어야 된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5개 이상을 자기가 일하는 과정에 탔어야지 공로자로 되어가지고 쌀을 배급 타는 걸 600을 탈 수 있거든요. (중

략) 공로자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공로자가 되는 거만큼 로임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퇴직하기 전 사회보장 넘기 전 자기가 돈을 얼마큼 탔느냐 거기에 한해서 사회보장비가 규정 되는 거죠. (연로보장도 마찬가지?) 네, 연로보장도 마찬가지죠. (중략) 부양으로 쌀 300타고 700원을 받는 사람은 사회보장이나 연로보장이나 같거든요 700원은. 연로보장대상도 700원 주고 사회보장 된 사람도 700원 주는데, 그 돈은 규정된 거고 그 이상으로 받는 사람은 내가 공로가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쌀을 600g 타느냐 300g 타느냐에 관계되고 돈은 내가 얼마큼 타냈는데 거기에 한해서 돈이 2,500원 타는 사람도 있고 1,200원 타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 (여/67세/평양/노동자/2011년 탈북)

영웅이기 때문에 년금이 나오는데 그 년금이 적지 않고 좀 클 거예요. (여/60세/함흥/초등교원/2004년 탈북)

국가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그것은 훈장으로 말해주거든요. 그걸 보고 주는 거예요. (여/59세/영변/방송/2007년 탈북)

같은 공로자라 하더라도 공훈 및 표창이 많을수록 공로자연금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다.

3) 공로자유가족연금

일하다가 아파서 죽은 게 아니라 일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열사가족이 돼요. 애국열사가족. 그러니깐 열사가족년금이 나오는 거죠. (중략) 혁명 열사하고 애국열사가 있는데 혁명열사는 빨치산, 전쟁참가자 이런 사람들이고 애국열사는 사회주의 그러니깐 이게 현재 죽는 사람들에 대한 거, 애국열사예요. (중략) 남파공작원. (중략) 그러나 그 안에서 세분화되어 대우자체가 다르죠, 같은 애국 열사지만. (여/59세/남포/회계담당/2002년 탈북)

죽지 않고 공로를 세운 사람은 공로자, 일하다가 내가 탄광에서 내가 일을

하다가 갱이 무너졌어. 갱도가 무너지니깐 내가 죽었어. 이거는 내가 열심히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갱이 무너져서 죽었잖아요. 내 불찰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사회주의의 애국열사죠. (그러면 유가족들에게 연금이지?) 년금이 나왔죠. 아이들한테도 계속. (일반사람들이 노환으로 죽으면 유가족들에게 연금은?) 그건 없어요. (여/59세/남포/회계담당/2002년 탈북)

열사 가족이랑 생기면 다줘요. 그건 유가족연금이니깐. 우리 할아버지가 열사였기 때문에 나한테 대대로 다 쪽 열사가족연금 받아요. 그건 공로자하고 달라요. (중략) 열사가족은 열사에게 주는 게 아니라 가족들한테 대대손손 준다니까요. (여/59세/남포/회계담당/2002년 탈북)

공로자들은 (승계)되지. 아버지가 만약 군대나가서 전사했다, 남조선에 가서 혁명 활동하다 죽었다, 이런 특별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족들은 대를 이어가며 몇 %를 줍니다. (중략) 그저 사회적으로 일하다가 그런 건 안 되고, 혁명유가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대남공작 갔다가 와서 하다가 년로보장비 나오면 사회보장비 받다가 그거는 그 집에서 한 사람을 대를 이어가며 줍니다. 몇 %를. 가족. 아버지가 내가 대남 나왔다가 죽었다,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 집 아들이 다섯이라도 어느 하나에다가 아버지가 100원을 탔다하면 어느 한 아들에다가 35%를 준다든지 하여튼 그런 돈 몇 %를 해서 30 몇 원을 주더구먼. 아들이 죽어서 손자가 있지 그러면 몇 % 낮게 또 줍니다. 그거는 대를 이어가며 줍니다. 그러나 그저 일반적으로 갱에서 일하다 죽어 그런 건 없습니다. 혁명유가족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여/77세/경원/식당노동/2004년 탈북)

공로자들은 부인에게 상속 되고, 자식에게 상속되고. 그런 법제도는 있어요. (중략) 자식들에게 전사자가족이면 아버지가 전쟁에 참가했다면 전사자가족으로서 찾아지는 게 있고. (여/78세/청진/중등교원/2005년 탈북)

혁명열사 가족들은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배려하는 거. 당중앙위원회에서 직접 줘요. 동사무소에서 주는 게 아니라. (남/77세/평양/대학교원/2007년 탈북)

공로자의 경우 공로자유가족년금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특히 항일투쟁활동, 빨치산활동, 한국전쟁 참전 등에 의해 선정된 혁명열사나 사회주의 로동 수행 중 부상 내지는 사망한 애국열사의 경우 보다 높은 연금액이 주어진다. 일부 진술에 따르면 이러한 혁명열사 유가족에게는 유가족연금을 비롯한 각종 혜택이 대를 이어 지속된다고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급여종류에 있어서 공로자연금과 공로자유가족년금은 확인되나 공로자로동능력상실년금은 확인되지 않는다. 급여수준에 있어서 공훈에 따라 급여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일반 근로자보다 급여수준이 높다는 것이 확인된다.

3. 전달체계

애국자도 영웅도 다 똑같이 동사무소에서 받아요. (남/45세/양덕/군인/2007년 탈북)

군대는 연금 관리를 따로 한다? 안 그러죠. 그 우리 아버지도 연금 타는 거 동사무소에서 탔다니까요? 함북 동사무소에서 군대를 탔기 때문에, 여기로 말하면 국방부에 가서 타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동사무소에서 일체로 다 준거거든요. (중략) 다 동사무소죠! 100%! 공로자고 뭐이고 다 동사무소에 타는데 그 탈 때 문건을 해 갖고 가야해요. 그 수속을 동사무소에다 올려놔야 하잖아요. (여/59세/청진/대학교원/2004년 탈북)

국기훈장 1급은 영웅이 됐을 때 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탔을 땐 국기훈장 1급, 로력훈장 그 다음에 국기훈장 2급부터 공로메달 이렇게 해서 5개 이상 될 때 그때는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대상이 되어서 그 사람들은 하루에 배급 600g, 한 달에 돈 60원 이렇게 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제다 기업소에서 주라 했으니깐 이젠 다 없어졌죠. (여/67세/사리원/공무원/2009년 탈북)

공로자년금도 일반 근로자의 년로년금과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서 수령한다. 일원화된 통합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년로년금 실태와 마찬가지로 2000년대 중반 모든 년금을 동사무소가 아닌 각 소속 해당 기업소에서 지급하라는 지시가 내려옴으로써 사실상 일반 노동자를 포함하여 공로자에 대한 년금 지급이 실제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진술도 있다.

VI.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공간문화에 기초하여 북한 공로자년금 제도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공로자년금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제도와 실태 간 일치 수준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접근가능한 북한 법령과 사전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제도와 실태를 비교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와 실태 간 일치 수준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완전 일치의 경우, 공민이면 누구나 공훈에 따라 공로자년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적용대상 기준, 년로년금 수급연령과 동일한 연령 기준, 공훈과 연동한 급여 수준,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급여수준, 통합 재정체계 및 통합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다. 부분 일치의 경우, 급여 종류에 있어서 공로자년금과 공로자유가족년금은 확인되나 공로자노동능력상실년금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공로자년금은 독립된 특수직역연금제도 또는 특별연금제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재정과 전달체계가 기존 년금제도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된 하나의 제도 내에서 부가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현금급여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

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공로자년금 실태 및 제도와 실태 간 일치성 수준

구분	실태	제도와 실태 간 정합성	
		결과	설명
적용대상	누구가 공로자가 될 수 있지만, 일반 근로자의 경우 공로자가 되기는 매우 어려움 공훈에 따라 수상한 훈장과 공로메달에 기초하여 공로자년금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년로년금의 수급연령과 동일함 공로자의 노동능력상실 시 공로자년금 적용대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국민이면 누구나 공훈에 따라 공로자년금 대상이 될 수 있음 연령기준 확인됨 노동능력 상실기준 확인 안 됨
급여	급여 공로자년금과 공로자유가족년금은 확인되나 공로자로노동능력상실년금은 확인되지 않음	△	2개의 급여종류만 확인됨
	급여 공훈에 따라 급여수준에 차이가 있음 수 일반 근로자보다 급여수준이 높음 준	○	공훈에 따른 급여임이 확인됨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급여수준임이 확인됨
재원	공로자들은 공로자년금을 받기 위해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음	○	통합 재정체계
전달체계	신청과 지급절차는 모든 년금제도가 동일함 공로자도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서 수급	○	통합 전달체계

본 연구는 공로자년금에 대한 탐색적 수준의 분석에 불과하므로, 향후 정확한 제도 및 실태 파악을 위해 관련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이에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이자 본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다. 첫째,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보장의 4가지 제도분석틀을 넘어 다양한 분석틀을 제시하여 보다 이론적이며 학술적인 함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수의 연구 참여자를 통한 질적 인터뷰를 통한 연구결과는 일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많은 대상을 포괄한 양적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을 통한 분석이 기존의 공로자년금에 대한 새롭고 구체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공로자년금에 관한 제도와 실태 간 일치 수준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접수: 2018년 4월 30일 / 게재확정: 2018년 5월 30일

【참고문헌】

- 김영운.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비교.” 『사회보장연구』, 제10권 제2호 (1994), pp. 83~122.
- 노용환·연하청. 『북한의 주민 생활보장정책 평가 - 국가배급제도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 문형표·이지혜. “남북한 통일 시 연금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8월호 (2013), pp. 29~67.
- 민기채. “북한 복지체제의 성격 변화에 관한 연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 비교.” 『2014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자료집』 (2014), pp. 866-902.
- 민기채·주보혜. “체제전환 전후 동독 특별·부가 연금제도의 변화: 통일 이후 북한 특권층 연금제도의 통합 시나리오 및 방향.” 『보건사회연구』, 제36권 3호 (2016), pp. 516~552.
- 박진·이유수.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및 통합방향』.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4.
-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6.
-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5』.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7.
-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28, 29』.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1.
- 백진현. “통일한국의 연금제도.” 『통일문제연구』, 제19권 (1997), pp. 20~23.
-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 1』. 제2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사회과학출판사.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 우해봉 외 공저. 『남북한 통일과 노후소득보장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서울: 국민연금연구원, 2011.
- 유근춘 외.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III)』.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이용하·이정우. 『통일시 남북한 연금제도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2002.
- 이용하 외 공저. 『통일 대비 효율적인 연금통합 방안 연구』. 전주: 국민연금연구원, 2017.

- 이철수. 『북한사회복지 - 반복지의 북한』. 서울: 청목출판사, 2003a.
- 이철수. 『북한사회복지법령집』. 서울: 청목출판사, 2003b.
- 이철수.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 구성 쟁점.” 『동서연구』, 제27권 4호 (2015a), pp. 55~87.
- 이철수.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요인: 제도와 SWOT분석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7권 2호 (2015b), pp. 121~170.
- 이철수.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에 대한 소고.” 『동북아연구』, 제30권 1호 (2015c), pp. 131~169.
- 이철수 · 민기채. “북한 사회보장과 연금제도 운영실태 분석.” 김원섭 외 공저. 『통일 연금연구 I』. 서울: 국민연금연구원, 2014.
- 이철수 · 이윤진. “북한 사회복지의 법제적 고찰 - 체제 · 범위 · 개입.” 『법학연구』, 제27권 2호 (2016), pp. 503~532.
- 이현경.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비교분석 - 사회적 욕구충족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감소를 위한 정책과 실태.” 『통일문제연구』, 제25권 1호 (2013), pp. 43~76.
- 장용철.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기초연구.” 유근춘 외,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III)』.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정경배 외 공저. 『남북한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 정기원 외 공저. 『남북한의 인구 · 보건 · 사회보장 비교』.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A Study of System and Practices of Pension for People of Merit in North Korea

Min, Ki-Cha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Cho, Sung-Eu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Han, Kyoung-Hun (Social Welfare Research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nsion for people of merit based on the North Korean original data(laws and dictionaries) and to analyze the level of consensus between the system and actual situation by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 of the beneficiary through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In addi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ystem and actual situation, it is aimed to understand whether the pension for people of merit is an independent pension system or an additional benefit system in the integrated pension system. The main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s the qualitative interview about North Korean refugees who have experienced the North Korean legislation related to the pension for people of merit from 1946 to 2016 and the analysis of the original docu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level of agreement between the system and actual situation, in the case of perfect agreement, anyone who is a citizen can become eligible subject to merit pension according to the meritorious year, the same age as the old-age pension, pension level linked with merit, higher pay levels than ordinary workers, an integrated financial system and an integrated delivery system. In the case of

partial agreement, the pension for people of merit and the survivors' pension for people of merit are identified in the type of benefit, but the disability pension for people of merit is not confirmed. Second, the pension for people of merit is not an independent special pension system. Since the financing and delivery system is integrated into the existing pension system, it can be interpreted as a special cash benefit to provide additional benefits within an integrated system.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integrated pension system after unification will guarantee social security rights and property rights of the elderly in North Korea, and will minimize unnecessary administrative judgment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will be alleviate social costs using this basic data.

Key words: unification, North Korea, old age pension, old age income security, North Korean refugees

민기채(Min, Ki-Chae)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근의 주요논문으로 "북한의 인체보험 제도와 실태"(공저), "통일 후 북한지역 생계급여 적용방안 및 재정추계에 관한 연구"(공저), "북한 사회주의 복지체제와 기본소득의 제도적 친화성에 관한 연구"(단독) 등이 있다.

조성은(Cho, Sung-Eun)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최근의 주요논문과 저서로 "북한의 인체보험 제도와 실태"(공저), "통일 사회보장 연구 주제의 동향 분석"(공저), 『북한사회변동 2017-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공저) 등이 있다.

한경훈(Han, Kyoung-Hun)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수료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최근의 주요논문으로 "북한의 인체보험 제도와 실태"(공저), "고령 북한 이탈주민 사회보장제도 활용의 제약요인 및 접근성 제고 방향"(공저) 등이 있다.